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 연계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필요 사항
- *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관련 현장조사 근거 반영
- *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필요 사항 등

3. 주요내용

- 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안 제1조의2 및 제1조의3)
- 나.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관련 출입·조사 권한 등(안 제70조 등)
- 다.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접속차단 명령 절차 등(안 제72조의2 등)
- 라.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긴급차단 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안 제72조의7)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 예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의 제목“(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을“(저작권 보호 종합 대책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 중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에 관한 사항
2.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3. 저작물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청소년”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대책 중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법 제2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종합대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종합대책 중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 이용,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발·표준화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조의3을 제1조의4로 하고,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추진계획 수립)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3. 사업의 기대효과

4. 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133조제2항”을 “법 제133조제3항”으로 하고, “수거·폐기”를 “수거·폐기·삭제 및 출입·조사”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 중 “수거·폐기·삭제”를 “수거·폐기·삭제 및 출입·조사”로 한다.

제70조제2항 전단 중 “업무”를 “및 출입·조사 업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의 “업무”를 “및 출입·조사 업무”로 한다.

제71조 중 “법 제133조제3항”을 “법 제133조제4항”으로 한다.

제72조의2 중 “전송중단”을 “전송중단 및 접속차단”으로 한다.

제72조의6제1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제7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7(긴급차단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4 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긴급차단을 하여 줄 것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3조의4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차단된 날부

터 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133조의4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긴급차단 해제를 명령한다. 단,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및 법 제133조의4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4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해제를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4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자에게 긴급차단을 해제하였음을 통지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거나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 사목 이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사. 법 제1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출입·조사를 정당한 이 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의3	150	300	500
아.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100	300	500
자.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 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300	500	700
차. 법 제133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정 정지 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500	700	1,000
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타.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5호	300	500	700
파. 법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 차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500	700	1,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2조의2, 제72조의6, 제72조의7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 책 수립) <신 설>	제1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보호 종 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 다) 중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에 관한 사항 2.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3. 저작물의 공정한 거래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의 보호 및 저 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 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	② 종합대책 중 법 제2조의2제1 항제2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신설>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
· 시행하는 저작물, 실연(實演)
· 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
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

1. (현행과 같음)

2. 수요자 맞춤형 -----
--

3. · 4. (현행과 같음)

③ 종합대책 중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 이용,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발·표준화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 종합대책-----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 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 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조의3(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추진계획 수립) ① 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조의3 (생략)

제70조(수거·폐기·삭제 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 133조제2항에 따라 수거·폐기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3. 사업의 기대효과

4. 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조의4 (현행 제1조의3과 같음)

제70조(수거·폐기·삭제 업무의 위탁 등) ① ----- 법 제 133조제3항----- 수거·폐기·삭제 및 출입·조사 -----.

1. ~ 2. (현행과 같음)

3. -----수거·폐기·삭제 및 출입·조사 -----

② -----및 출입·조사 업무-----
----- 및 출입·조사 업무-----

제71조(수거·폐기·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3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 3. (생략)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

제71조(수거·폐기·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4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

-- 전송중단 및 접속차단-----

-----.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①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3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7일

2.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

1. -----제1호·제2호
및 제4호-----: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의7(긴급차단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
조의4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긴급차단을 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3조의4제3항에 따라 이
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차단된 날
부터 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서 내
용을 확인하여 법 제133조의4제
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긴급
차단 해제를 명령한다. 단, 이의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및 법 제133조의4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4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해제를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4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자에게 긴급차단을 해제하였음을 통지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거나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연 락 처	(044) 203 - 2091